

202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3명

(단위: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제주
13	1	1	2	1	2	-	2	1	-	2	1	-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 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
-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6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8.(금)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PC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본인인증 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 → 원서접수 → 원서접수 신청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 응시원서 작성 → 응시료 결제(신용카드/휴대폰/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 → 접수확정 문자 수신(1~2일 소요) →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별도 가입절차 없음)
- 사진 1매 등록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3cm×4cm)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150×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의 이미지 파일로 등록
- 승무경력증명서 스캔하여(PDF 파일) 첨부
 -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인정
 - * 승무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면 캡처 등 관인이 생략되거나 원본서류의 스캔이 아닌 서류는 불인정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 의함

다. 응시표 교부

-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응시자격서류 확인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정되면 출력 가능

※ 접수 완료 및 서류 재등록 후 응시자격서류 확인 완료까지 **약 1~2일 소요**

라. 응시수수료 : 20,000원

마.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안내(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
➔ 원서접수(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해당 화면에서 환불받을 계좌 등록
- 환불요청 후 10일(평일 기준)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 입금 처리

※ 환불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 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
|---|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	2026. 10. 17.(토) 09:00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6. 10. 22.(목) 10:00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면접시험	2026. 11. 7.(토) 10:00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6. 11. 10.(화) 10:00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1. 법규 :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30점	75분
2. 선박운용 :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정보시스템, 지문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점	75분
3. 해상교통관리 :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점	35분
4. 영어 :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점	55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26년 9월 13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7. 성적열람 안내

시험구분	열람 기간	조회 장소
필기시험	2026. 10. 22.(목) 10:00 ~ 10. 28.(수) 18:00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열람 기간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이후 성적 확인은 불가합니다.

* (비공개 대상) 시험 문제, 채점 기준 및 내용, 면접시험 점수

8. 도선구 결정

-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 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9.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10.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실물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중 1개 제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 중 응시자의 전자기기 등은 소지가 제한되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불가**합니다.

* 신(新)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

- 응시자는 시험 중에 **전자·통신기기***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는 응시자별 시험 종료 후 반환됩니다.(점심시간 사용 불가)

* 휴대용 전화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통신·계산·검색·촬영·녹음·인터넷 접속·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 일체**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할 경우 해당 교시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한 후 퇴실하고, 해당 교시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 시험 도중 결시 등 시험장 이탈 시에는 본 시험 전체를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 없이 무효처리** 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본 시험의 **최종 교시 종료 후 연수원 밖으로 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원 내 매점 등 식음료 구매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원 내 구내식당 운영 불가

- 답안 작성 시 지정 필기구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또는 청색 펜, 만년필**이며, 지정된 필기구 외의 모든 물품(자, 메모지, 독서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 또는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해당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 일부를 훼손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문제 및 정답을 적어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에 합격하여도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72)로 문의,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